

일제하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발행과 법률 관련 자료의 경향

황민호*

목 차

- I. 머리말
- II. 韓日合邦 전후 日人言論의 동향
- III. 『朝鮮總督府月報』의 발행과 법률관련 자료의 성격
- IV. 『朝鮮彙報』의 발간방침과 그 경향
- V. 『朝鮮』과 『朝鮮文朝鮮』의 경향과 성격
- VI.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기관지인 『조선총독부월보』와 『조선회보』, 『조선』, 『조선어 조선』에 게재되어 있던 법률 관련 논설이나 자료들의 내용과 경향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나타내고 있던 식민지성의 한 측면을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일제시대 전 기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었던 것은 첫째, 한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필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다양한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대중들에게 홍보하는데 있어서 잡지 형태의 기관지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했던 기관지에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 중요법령에 대한 다양한 논설 및 법률관련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1910년부터 1930년 중반까지는 주로 총독부가 시행했던 경제관련 법률과 형법관련 법률이 게재되어 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시통제 법령에 대해 입법취지와 법령의 내용이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회보』와 『조선』은 그 발행 규정을 총독부 법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총독부 각 부서의 관리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자료를 통해 일제하의 법령 통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전시통제, 입법취지,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회보』, 『조선』, 『조선어 조선』

I. 머리말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을 일반에게 주지시키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행정달단에서까지 전달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발행하였으며, 『朝鮮總督府月報』(1911.6~1915.2), 『朝鮮彙報』(1915.3~1920.6), 『朝鮮』(日語版, 1920.7~1944.12)과 『朝鮮文朝鮮』 등이 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그리고 각 기관지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총독부의 지배정책과 관련된 법률, 사법, 행정에 대한 다양한 기사나 논설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지배정책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회보』와 『조선』에는 다수의 법률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朝鮮文朝鮮』의 경우에는 국어, 문학, 민속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인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통제법령을 제정하여 이른바 법적

1) 한글판 조선은 『朝鮮文朝鮮』, 『조선문 조선』, 『조선朝鮮』, 『조선朝鮮』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이며, 1991년 출판사 『서광』에서 『朝鮮文朝鮮』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을 영인하여 발간하면서 1924년 1월부터 1934년 3월까지의 표지를 수록하였으며, 1929년 1월과 1929년 12, 1931년 1월에 발간된 잡지의 복사본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남아있다. 이밖에 연세대학 중앙도서관에 제39호(1920년 12월), 제52호(1921년 12월), 제65호(1923년 2월)호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통제에 의한 강압적 식민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식민지 악법이 양산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아 제령7호(1919) · 치안유지법(1925) · 사상범보호관찰령(1936) 및 1937년 이후 제정된 다양한 전 시통제법령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조선휘보』와 『조선』은 이러한 법령의 식민지성을 규명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朝鮮文朝鮮』의 경우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발간한 기관지이기 때문에 『조선문조선』 편집체계 및 법률관련 기사의 내용을 『조선』과 비교해 보는 것은 총독부의 지배정책이 나타내고 있는 식민지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우선 한일합방 전후 日人言論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잡지 형태의 기관지를 발간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또한 『조선총독부월보』 이후 총독부 기관지의 변천과정 및 그 성격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총독부 기관지에 나타났던 법률관련 기사와 논설의 경향과 중요법률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본고의 이러한 검토는 궁극적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발행목적 및 총독부 기관지에 나타나는 법령관련 자료의 특징과 그 내용의 식민지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韓日合邦 전후 日人言論의 동향

국내에서의 일인들의 언론활동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을 옹호하거나 나름대로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인들에 의해서 발행되었던 신문으로는 우선 1881년 12월 12일 부산에서 창간되었던 『朝鮮新報』가 있었는데 이 신문은 우

2) 황민호, 「일제의 식민지언론정책과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정신문화연구』 제91호(2003).
황민호, 「한국근대잡지에 나타난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 『정신문화연구』 제91호(2003).

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보다도 2년이나 앞서서 발행된 것이었다. 이후 일인들의 신문발행은 러일전쟁 이후 크게 급증하여 한일합방 직전까지 60여종의 신문들이 서울, 부산, 안천, 군산, 목포, 대구, 전주, 평양, 개성, 청진, 마산, 진남포, 나남, 신의주 등 전국의 중요 도시에서 발행되었다.³⁾

뿐만 아니라 당시 신문 가운데 의무성의 기밀보조비로 운영되었던 『漢城新報』와 1906년에 총독부기관지로 창간되었던 『京城日報』 등은 조선침략의 침병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一進會의 기관지였던 『國民新報』와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였던 『大韓新聞』, 민원식이 발행했던 『時事新聞』 등의 친일신문들도 일제의 조선침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일합방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한편, 일인들이 발행한 잡지의 경우도 다양한 종류가 출간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1898년 7월에 창간되었던 『漢城月報』이며, 志村作太郎에 의해 발행되었는데 이 잡지에서는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수의 외신관련 보도가 소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⁵⁾

또한 1907년 9월 11일에 발간되었던 『漢陽報』는 정치색이 강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잡지발간에는 漢陽報主任 日戶勝郎, 時事新報支局主任 久田宗作, 京城日報主筆 服部 暢, 大阪每日支局主任 中島司馬助, 大韓每日理事 戶叶熏雄 등이 ‘주창자’로, 統監府囑託 內田良平, 朝鮮新報主任 熊谷直亮, 朝鮮日日新聞主任 金井忠雄, 朝鮮タイム스主任 荻谷籌夫 등이 ‘찬성자’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양보』는 그 發刊趣意에서도,

3) 崔坡, 「軍國日本の 對韓言論政策」, 『韓國新聞史論叢』(일조각, 1976), 223~226쪽.

4) 장석홍, 「일제의 식민지언론정책과 총독부기관지 每日申報의 성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1992).

5) 이 잡지에서는 논설, 소학만국지리, 소학만국역사, 교육, 위생부, 농업부, 상업부, 각국시사 등을 체제를 구분하여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1900년 1월에 중단되었다. 1898년 11월에 발행된 제6호를 통해서 볼 때 ‘불란서의 드레후스 事件’·‘露帝의 讓位說’·일본의 ‘新式連發銃’·‘比律賓이키날도氏의 來遊’ 등의 외신이 소개되고 있었다. 최덕교, 『한국잡지 100년』 제1권(현암사, 2004), 35~352쪽.

‘한일관계가 점차 친밀해 진다고는 하나 인심의 조화를 아직 얻지 못했으니 양국 識者의 의견을 교환하여 바다에 깔린 본심을 토로함은 양국의 평화와 행복에 긴요한 일이다. … 본지가 양국 식자사이에 의견을 소개하여 한결같이 雙全한 경지에 돌아가게끔 하려는 것이다.’⁶⁾

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이 잡지는 한일합방 직전 일본 언론인들과 조선 총독부가 결탁하여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는 언론활동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⁷⁾ 뿐만 아니라 이 잡지에 ‘戒暴動團·治安維持乎 治安妨害乎’·‘伊藤侯의 演說’·‘伊藤統監과 貴族院’ 등의 논설이 게재되고 있던 점 등도 『漢陽報』의 정치적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시기에는 釋尾春菴에 의해 『朝鮮及滿洲』라는 잡지도 발간되고 있었는데 이 잡지는 釋尾가 총독부의 지원 하에 간행되었으며, 東拓 관계법⁸⁾·치안유지법⁹⁾·盜犯防止法¹⁰⁾·경제통제법¹¹⁾에 관한 논설이나 3·1운동의 수습책¹²⁾ 등 총독부의 식민지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성향 강한 논설¹³⁾들을 게재

6) 위의 책, 354쪽 재인용.

7) 위의 책, 354쪽.

8) 川上常郎(東拓理事), 「東拓法改正後の東拓の活動」, 『朝鮮及滿洲』 122(1917. 8); 山崎元幹(法學士), 「東拓會社法改正と滿洲」, 『朝鮮及滿洲』 122(1917. 8).

9) 釋尾東邦, 「治安維持法案に就て」, 『朝鮮及滿洲』 208(1925. 3).

10) 泉二新熊(司法省刑事局長, 法學博士), 「盜犯防止の法律に就いて」, 『朝鮮及滿洲』 274(1930. 9); 深澤新一(法務局長)談, 「盜犯防止法に就て心得べき要點」, 『朝鮮及滿洲』 275(19 30. 10); 宮本元(京城高等法院判事), 「盜犯防止法上の正當防衛側面觀」, 『朝鮮及滿洲』 276(1930. 11).

11) 平井武臣(城大法科), 「經濟統制法の法制度的意義」, 『朝鮮及滿洲』 389(1940. 4) 경제통제법과 관련해서는 1940년 7월까지 연재되어 있다.

12) 釋尾春菴, 「騷擾事件の真相と所感」, 『朝鮮及滿洲』 142(1919. 4); 釋尾春菴, 「如何に此時局を拾收せんとするか」, 『朝鮮及滿洲』 142(1919. 4); 城南逸士(文學博士), 「朝鮮統治の實績を裏切る暴徒の蜂起」, 『朝鮮及滿洲』 142(1919. 4); 官民數十名士, 「朝鮮騷擾事件と官民の所感」, 『朝鮮及滿洲』 142(1919. 4); 「學生騷擾事件と各學校長」, 『朝鮮及滿洲』 142(1919. 4).

13) 釋尾春菴, 「總督政治に對し朝鮮人は何の不平あるか」, 『朝鮮及滿洲』 54(1912. 8); 菅原精一郎(東京), 「植民地統治者としての寺内伯」, 『朝鮮及滿洲』 100(1915, 11); 釋尾春菴(東

하고 있었다. 실제로 釋尾는 데라우찌의 이민정책에 대해 첫째, 총독의 시정방침이 신영토의 개발경역에 적합한 것인가, 둘째, 관료들이 조선인의 항배에만 신경을 써서 일본인의 여정과 성쇠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이민과 식민을 막는 것은 아닌가, 셋째, 총독정치가 너무 질서유지와 무사태평을 바란 결과 민심의 권태와 사업계의 부진을 초래하여 조선개척의 전도가 요원한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제기하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통해서 볼 때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던 국내에서 일인들에 의해서 발행되던 각종 신문이나 잡지들은 큰 틀에서는 총독부의 조선지배 정책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총독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釋尾는 『朝鮮及滿洲』의 중요 내용을 간추려서 『滿洲及朝鮮之研究』 제1집(1908~1915)과 『朝鮮之研究』(1916~1930)가 간행되기도 하였다.¹⁵⁾

〈표 1〉 日人 發行 重要 雜誌의 現況¹⁶⁾

잡지명	창간연도	장소	발행인	출판사 및 발행처	비고
愛國班	1943	서울	奧山仙三		
全北總力	1943	진주	四見正義		격주간
總力全南		광주	松澤新太郎		
朝鮮佛教	1924.5~1933.7		中村健太郎	朝鮮佛教社	
咸北總力月報	1943	함흥	米澤九郎		

邦), 「朝鮮に於ける參政權問題」, 『朝鮮及滿洲』 182(1923. 1).

- 14) 『朝鮮及滿洲』, 『朝鮮』, 244~255쪽.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2005. 3) 참조.
- 15) 국사편찬위원의 ‘역사통합 한국근대잡지’ 사이트에는 1912년 2월 47호부터 1941년 1월 398호까지의 기사 목록이 거의 대부분 제공되고 있다. 釋尾는 1900년에 내한한 이후 1908년에 朝鮮古書刊行會를 설립하고 총 28종 82책의 고전을 ‘朝鮮古書大系’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의 처음에는 호는 旭邦이었으며, 후에 東邦으로 고쳤다고 한다. 『滿洲及朝鮮』은 1907년 경부터 발행되었던 『朝鮮』이 명칭을 달리하여 1908년 이후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참조.
- 16) 이 표는 국회도서관, 『韓國新聞雜誌叢目錄』(1883~1945)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학회지, 동창회보 등은 생략하였다.

잡지명	창간연도	장소	발행인	출판사 및 발행처	비고
漢城月報	1898.7~1900.1	서울	志村作太郎	漢城月報社	
漢陽報	1907.9	서울	日戶勝郎	漢陽報社	
滿洲及朝鮮	1908	서울	釋尾春菴	朝鮮古書刊行會	
半島の光	1943	서울	海水精一		
가정잡지	1922.5	서울	芮偲搭	家庭雜誌社	
基督教月報			渡瀨日吉		
內鮮一體	1914.1~1944.10	서울	大倉ネトウサ	內鮮一體社	
綠旗	1936.1~1941.10	서울	津田剛	興亞文化社	
半島時論	1917.4~1919.4	서울	竹內錄之助	半島時論社	
法令解釋誌	1917.12		本彌之助	朝鮮法令社	
臣道	1943	함흥	竹久勝藏		
우리의 가명	1913.12~1914.11		竹內錄之助	新文社	
自啓	1928.2	서울		朝鮮警察協會京畿道支部	
治刑	1923.11	서울	小見門卯	治刑協會	
朝鮮財政	1923.5	서울		朝鮮財政協會	
朝鮮行政	1937.1	동경		帝國地方行政學會	
京城彙報	1925.6	서울		京城府	
釜山	1925.7	부산		釜山府內務系	
司法協會雜誌	1922.1	서울		司法協會	
東亞經濟時報	1920.1	서울	中村資郎	東亞經濟時報社	
總力平南	1943			平南道廳	
總動員	1939.6~1940.8		鹽原時三郎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朝鮮財務	1923.5			朝鮮財務協會	
朝鮮地方行政	1924.3	서울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支部	
警務彙報	1910.12	서울		朝鮮警察協會	

또한 1910년대에 발행되었던 잡지로는 1917년 4월 10일에 창간된 『半島時論』이 있었는데 이 잡지는 당시 서울에서 『新聞世界』·『新聞界』·『우리의家』

庭』 등을 발간했던 竹內錄之助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특히 이 잡지는 창간사에서 ‘명의상이나 실행 상에 당당한 제국신민인 반도동포는 지식을 세계에 구하고 실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重負’를 원조하고 ‘博識’을 애호하기 위해’ 잡지를 발간한다고 함으로써 조선의 문명개화를 지도해야 의무가 일본인에게 있음을 선언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¹⁷⁾ 창간호에 새로 부임하는 長谷川好道 총독의 사진과 그에 대한 환영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며,¹⁸⁾ 발간축사는 조선총독부 편집과장 小田省吾가 집필하였는데 이는 『반도시론』이 조선총독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잡지에는 ‘鑛業令’¹⁹⁾과 ‘朝鮮刑事令’²⁰⁾ ‘書堂規則’²¹⁾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한편 <표 1>을 통해서 보면 일제시기 전 기간을 통해 日人이나 조선총독부에 의해 다양한 잡지들이 출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조선총독부가 조선통치에 관한 총독부의 정책과 정치적 견해를 국내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과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관지를 시기별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출간했던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Ⅲ. 『朝鮮總督府月報』의 발행과 법률관련 자료의 성격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1910년 10월 1일 ‘총독부관제’를 발표하여 總督官房과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를 두는 1관방 5부 체제를 확립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여 갔다.²²⁾ 그리고 1911년 5월에는 총독부훈령 제41호를 근거로 『朝鮮總督府月報』(이하 月報)를 발간하였는데 그

17) 「半島時論의 發刊과 吾人の 主張」, 『半島時論』 1-1(1917. 4).

18) 「社說—長谷川 新總督을 迎함」, 『半島時論』 1-1(1917. 4).

19) 丹樵生, 「新鑛業令에 就하야」, 『半島時論』 1-4(1917. 7).

20) 「朝鮮刑事令改正의 要旨」, 『半島時論』 2-4(1918. 4).

21) 「書堂規則과 訓長의 注意」, 『半島時論』 2-4(1918. 4).

22) 「朝鮮總督府官制」, 勅令 第354號, 『朝鮮總督府官報』, 第28號, 明治43年(1910) 10月 1日

발행 규정을 특징을 검토해 보면 ‘월보’의 체제상의 특징과 그 발행목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조 조선에 있어서 施政, 産業 其他의 狀況을 蒐錄하기 위해 매월 20일 조선총독부 월보를 발행한다.

제2조 월보는 總務部 文書課에서 편찬한다.

제3조 월보에 게재할 사항은 左의 區分에 의함. 1. 농업 및 植林 2. 상공업 3. 광업 4. 수산업 5. 무역 6. 운수 및 교통 7. 理財 및 金融 8. 교육 9. 社寺宗教 10 위생 11 구휼자선 12. 지방행정 13. 司法 14. 調查資料 15 通計

제4조 월보에 기재할 材料는 關係의 各部 및 소속부서에서 그것을 蒐集할 것.

제5조 자료의 描集을 위해서 각부 각 소속관서(道에 있어서는 내무부 및 재무부)에 각 1명의 月報 報告主任을 둔다. 월보주임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 중에서 소속장관 이 임명하여 그 官氏名을 문서과장에서 통지할 것

제6조 月報報告主任은 月報에 게재할 事項을 조사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문서과장에 게 送付할 것.

제7조 원고 마감 기한은 매월 10일로 할 것

제8조 文書課長은 月報掲載事項에 관해 월보 보고주임에게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제9조 월보 원고는 개별양식의 원고용지에 기입할 것, 단 統計, 圖表 및 인쇄에 관한 것은 편의상 美濃 013 行 罫紙 또는 美濃 白紙에 이를 기입 또는 美濃 白紙에 이를 첨부하여 대응할 수 있다.

제10조 月報는 朝鮮總督府 印刷局이 인쇄함. 인쇄국장은 依賴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할 것, 그 料金은 인쇄국장이 정할 것.²³⁾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째, 『조선총독부월보』는 발행규정 제1조에서 ‘조선에 있어서 施政, 産業 其他의 狀況을 蒐錄하기 위해 발행한다.’ 라고 함으로써 월보의 발행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발

2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1-7), 1911. 12.20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월보는 總務部 文書課에서 발행하며, 게재할 기사의 내용은 총독부 내 각부 및 소속부서에서 모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월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월보’에 기재될 사항은 모두 15개의 항목 즉, 1. 농업 및 植林, 2. 상공업, 3. 광업, 4. 수산업, 5. 무역, 6. 운수 및 교통, 7. 理財 및 金融, 8. 교육, 9. 社寺宗教, 10 위생, 11 구휼자선, 12. 지방행정, 13. 司法, 14. 調查資料, 15 通計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는 총독부가 월보를 통해 조선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비교적 세분화해서 수집하거나 홍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분류항목에 위생과 구휼자선이 포함된 것은 총독부의 사회정책이 施惠的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의 반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제5조에서 보면 자료의 描集을 위해 총독부 각 부서에는 1명의 월보 보고주임을 두며, 월보주임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월보의 체계적인 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月報’의 발행 규정은 이후 1913년 11월에 들어서 총독부령 제518호로 개정되었는데,²⁴⁾ 이로 인해 그 편집방침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조 : 조선에 있어서 施政 기타 제반의 사항을 周知시키기 위하여 매월 1일 조선총독부월보를 발행한다.

제2조 : 월보는 官房總務局總務課에서 이를 편찬한다.

제3조 : 月報에 掲載할 概目は 아래와 같다. 1. 主要記述, 2. 調查資料, 3. 雜錄, 4. 敍任及司令, 5. 統計, 6. 判決例, 7. 法令 및 通牒

제4조 : 월보 편찬을 위하여 編纂委員 數名을 둔다.

제5조 : 총무과장은 매월 1일 各編纂委員會를 개최하여 編纂에 관한 打合을 할 것

2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5(1989. 12).

제6조 : 月報 원고 마감은 매월 15일로 한다

제7조 : 월보는 官房總務局印刷所에서 이를 인쇄한다.

제8조 : 월보에는 依賴에 따른 광고를 인쇄할 수 있으며, 그 料金は 印刷所長이 이를 결정한다.

附則

本令은 大正3년(191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²⁵⁾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이 시기의 ‘月報’는 그 발행 목적을 ‘조선에 있어서 施政 기타 제반의 사항을 周知시키기 위해’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施政, 産業 기타의 상황을 蒐錄한다고 규정’했던 이전의 발행 목적에 비해 보면 ‘월보’의 정책홍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월보는 15개 항목이었던 기재사항이 7개의 ‘概目’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이전에 비해 敍任 및 司令, 判決例, 法令 및 通牒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명시되고 있어서 ‘月報’의 官報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발행 부서가 총무부 문서과에서 관방총무국 총무과로 변동되었으며, 인쇄처는 관방총무국 인쇄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총독부의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이 시기에는 ‘月報編纂委員會’가 구성되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총독부가 ‘月報’의 발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月報’ 편집위원회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전 월보의 편찬업무를 담당했던 ‘주임관’과 ‘판임관’ 등이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⁶⁾

月報에 게재되었던 법령관련 기사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우선 월보에서는

25)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研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京城, 1935).

2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1-7), 1911. 12.20 總訓 41호 제5조에 ‘월보보고주임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 중에서 所屬長官이 명하고 그 官氏名을 文書課長에게 通知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에 관한 논설이나 별도의 해설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민·형사판결’·‘법령’ 등을 항목으로 하는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실제로 ‘朝鮮慣習에 관한 回答’²⁷⁾이나 民·刑事 事件의 ‘判決例’²⁸⁾ 등에서는 토지소유권이나 경작권에 관한 판결 내용이나 법률적 적용의 논리적 근거에 관한 내용이 자주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地稅令·市街地稅令·煙草稅令·國稅徵收令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으며,³⁰⁾ ‘監獄事務’와 ‘寺刹令’·‘農工銀行令 및 地方金融組合令 改正要旨와 指紋法 시행에 대한 입법취지와 법령의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었다.³¹⁾ 특히 지문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구한국이나 총독부의 법규에 의해서 ‘징역에 처해졌거나 또는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진 죄를 범한 자’에게 지문을 ‘徵取’하도록 한다고 함으로써 지문법 시행이 한일합방 이후 치안질서의 유지를 위해 도입된 법률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³²⁾ 그리고 ‘寺刹令’에 관한 기사에서는 각 지역의 本山의 소재지와 중요 관련자 및 사찰령의 일반적 특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³³⁾ 이밖에 ‘감옥사무’와 재판사무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지배정책이 무단통치에 입각한 강압적 탄압정책이었던 것과

27) 「法令及通牒(朝鮮舊慣ニ關スル回答)」, 『朝鮮總督府月報(4-10)』(1914. 10); 「法令及通牒(朝鮮舊慣ニ關スル回答)」, 『朝鮮總督府月報(4-12)』(1914. 12).

28) 「判決例(民事一耕作權確認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8)』(1914. 8); 「判決例(民事一土地所有權確認及引渡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10)』(1914. 10) 이외에 토지와 관련된 民事에 대한 다양한 ‘判決例’가 나타나고 있다.

29) 「判決例(民事一耕作權確認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8)』(1914. 8); 「判決例(民事一土地所有權確認及引渡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10)』(1914. 10) 이외에 토지와 관련된 民事에 대한 다양한 ‘判決例’가 나타나고 있다.

30) 관련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法令(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市街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煙草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國稅徵收令中改正)」,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31) 『朝鮮總督府月報』에 수록된 법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朝鮮總督府機關誌에 收錄된 憲政·法學 關聯記事目錄’을 참조할 것.

32) 「指紋法施行ノ概況附指紋法大義」, 『朝鮮總督府月報(2-2)』(1912. 2).

33) 「寺刹令施行狀況一斑」, 『朝鮮總督府月報(2-8)』(1912. 8); 「寺刹令施行狀況一斑」, 『朝鮮總督府月報(2-9)』(1912. 9).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⁴⁾

IV. 『朝鮮彙報』의 발간 방침과 그 경향

『조선총독부월보』의 뒤를 이어 발행되었던 『朝鮮彙報』(이하—彙報)는 1915년 2월에 시행된 조선총독부 훈령 제5호를 근거로 총독부가 그 제호와 편집방침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발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9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휘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彙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大正 4年 3월 1일부터 시행함

朝鮮總督府月報에 관한 규정은 이를 廢止한다.

제1조 조선에 있어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널리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매월 1일 조선휘보를 발행함

제2조 조선휘보에 게재할 사항의 概目은 다음과 같다. 1. 敍任 및 司令 2. 行政 3. 財政 및 金融 4. 産業 5. 交通 및 土木 6. 學事 7. 司法 및 警察 8. 研究資料 9. 外國事情 10. 地方通信 11. 雜報 12. 質疑應答 13. 統計 14. 法令 및 通牒 15. 判決例 16. 國語 및 朝鮮語 研究.

제3조 조선휘보 편찬을 위해 편찬위원장 및 위원 數人을 둠. 위원장은 總務局長으로 원하고, 위원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高等官을 중심으로 임명함

제4조 위원장은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編纂에 관한 打合을 해야 한다.

제5조 조선휘보 원고는 매월 10일까지 官方總務局總務課로 送付할 것

제6조 조선휘보의 의뢰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할 때 그 料金は 별도로 정함.³⁵⁾

34)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監獄作業ノ概況』, 『朝鮮總督府月報(1-6)』(1911. 11); 『裁判事件表』, 『朝鮮總督府月報(2-12)』(1912. 12); 『監獄教誨ノ概況』, 『朝鮮總督府月報(2-7)』(1912. 7); 『裁判事件表』, 『朝鮮總督府月報(2-9)』(1912. 9).

35)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1915. 5).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째, 조선총독부에서는 1915년 3월 1일을 기해 ‘彙報’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朝鮮總督府月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회보’가 ‘조선총독부월보’의 후신으로 발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앞서 총독부령 518호로 변경되었던 7개 항의 ‘月報’ 편집방침과 16개 항목으로 늘어난 ‘彙報’의 편집방침을 비교해 보면 양자의 내용상의 변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회보에서는 이전의 월보에 비해 그 수록 내용을 行政, 財政 및 金融, 産業, 交通 및 土木, 學事, 司法 및 警察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정책에 따라 회보가 관련사항을 조사 하거나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月報’에는 없던 외국사정, 지방통신, 질의응답, 국어 및 조선어 연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회보’에 수록되는 내용이 월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편집체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월보’에서 ‘회보’로의 전환은 총독부의 기관지의 발간이 그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기관지로 전환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조선에 있어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널리 상세히 알리기 위해’ 조선회보를 발행한다고 한 그 발행규정 제1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917년 10월 호에 게재된 「朝鮮彙報의 改良」이라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本誌는 본래 朝鮮總督府月報라고 칭하여 明治 44년(1911년- 필자) 6월에 創刊되었으며, 大正 4년(1915년- 필자) 3월 朝鮮彙報로 바뀌게 되었으며, 創刊이래 銳意盡力하여 조선의 行政 기타 諸般의 狀況을 일반에게 모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³⁶⁾

이밖에 회보는 1917년 10월에 한글판 地方號'를 발행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36) 「朝鮮彙報의 改良」, 『朝鮮彙報』(1917. 10).

정책방향이나 목표가 지방의 하부 행정조직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 本誌는 10월 15일 창간 이후 매월 15일에 발행함
- 本誌는 行政, 産業, 納稅, 民籍, 例規 등 특히 面行政上에 필요한 諸般의 記事를 網羅함
- 本誌는 기사를 平易한 諺文을 주로 함으로서 朝鮮人 諸士는 누구라도 容易하게 諒解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또한 內地人인 朝鮮語를 습득함에는 絶好의 參考書가 되게 함.
- 本誌의 定價은 1부 12錢으로 함.
- 本誌는 依賴가 있을 경우 광고를 게재함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총독부에서는 면 행정상에 필요한 행정, 산업, 납세, 민적, 예규 등에 관한 제반 내용을 평이한 한글을 사용하여 편찬한다고 함으로써 총독부의 지방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회보’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이 책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들에게 유용한 한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彙報地方號’를 발행했던 것은 1914년부터 실시되었던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1917년 ‘面制’의 전면적 실시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던 상황의 반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18년에 들어 조선에 대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마무리한 총독부로서는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⁸⁾

또한 ‘회보’에서는 경찰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한일합방 이후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던 ‘朝鮮警察’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³⁹⁾ 이밖에도 ‘조선총독부월보’에 수록되어 있던 ‘判決例’나 ‘法令 및 通

37) 「朝鮮總督府發行 朝鮮彙報 地方號」, 『朝鮮彙報』(1918. 10).

38)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2003), 64쪽.

39)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4(1994).

牒'의 항목도 여전히 수록되고 있었다.

<표 2>를 통해서 보면, 彙報의 경우 총독부 관방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 경무관, 시학관, 통역관 등이 편찬 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휘보의 발행이 나름대로의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⁴⁰⁾

〈표 2〉『朝鮮彙報』의 編纂委員의 1910년대 후반의 略歷⁴¹⁾

구분	이름	조선휘보에 기재된 소속·직위	중요사항
위원장	兒玉秀雄	總督府 總務局長	伯爵
위원	荻田悅造	朝鮮總督府 書記官	(1915) 總督官房－總務局－總務課 事務官 官報報告主任, 課長
	遠藤柳作	朝鮮總督府 書記官	(1915) 總督官房－總務局－總務課 事務官 (兼) 秘書官
	今村邦典	朝鮮總督府 書記官	(1916) 總督官房－總務局－總務課 事務官 (兼) 彙報編纂委員
	菱典靜治	朝鮮總督府 通譯官	
	新庄順貞	朝鮮總督府 通譯官	(1915) 總督官房－總務局－總務課 通譯官
	岡今朝雄	朝鮮總督府 事務官	(1916) 總督官房－土木局－土木課 事務官 課長, 雇員考查委員, 物品出納命令官, 彙報 編纂委員
	小田幹治郎	朝鮮總督府 事務官	(1915) 總督官房－總務局－總務課 事務官 (兼) 參事官室勤務
	田中卯三	朝鮮總督府 事務官	(1916) 朝鮮總督府－內務部－第1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秋山鐵太郎	朝鮮總督府 視學官	(1915) 內務部－學務局－[直屬] 視學官

40)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1915. 5. 1).

41)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1915. 5. 1)의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가운데 '직인록 자료 중 조선총독부 직인록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이용된 자료는 "日本『職員錄』중 朝鮮總督府篇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라고 한다.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대로 기재해 두었다.

구분	이름	조선휘보에 기재된 소속·직위	중요사항
위 원	林茂樹	朝鮮總督府 事務官	(1918) 度支部一司計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雇員 考査委員
	本岡榮次郎	朝鮮總督府 書記官	(1916) 農商工部一商工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和田駿	朝鮮總督府 鐵道局 參事	(1916) 朝鮮總督府直屬機關一鐵道局一總務課長, 統計主任, 彙報編纂委員
	島田志良	朝鮮總督府 遞信局 書記官	(1917) 朝鮮總督府直屬機關一遞信官署一遞信局一監理課一[直屬] 事務官 課長, 文官普通試驗委員 統計主任, 彙報編纂委員
	亥角仲藏	朝鮮總督府 警務官	(1916) 朝鮮總督府直屬機關一警察官署一警務總監部一[直屬] 警務官 彙報編纂委員
	鏡保之助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技師	(1917) 朝鮮總督府直屬機關一勸業模範場一[直屬] 技師 彙報編纂委員
	宇野三郎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 技師	(1917) 朝鮮總督府直屬機關一中央試驗所 技師 (兼) 彙報編纂委員, 京城工業專門學校教授
	飯島榮太郎	朝鮮彙報 編纂事務 囑託	

또한 ‘彙報’에는 총독이나 각부 장관의 訓示와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해당 부서 당국자의 논설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휘보’에 게재되어 있는 법령관련 중요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3>와 같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보면 ‘彙報’에는 일제가 제정한 다양한 법령들에 대한 해설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연재기사를 게재하여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⁴²⁾ 이는 ‘月報’의 경우와는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2) 牧野英一(東京帝國大學法科大學教授, 法學博士), 「最近の法律思潮」, 『朝鮮彙報』(1917. 10).

〈표 3〉 조선취보에 게재되었던 중요 법률 관련 기사 목록

성명 및 지위	기사제목	호수
關屋貞三郎(學務局長)	私立學校規則改正의 要旨	1915. 4
	朝鮮寺刹各本寺聯合制規의 要項	1915. 4.
	私立學校規則改正 및 私立學校敎員試驗施行規則에 관한 寺內 總督訓令	1915. 5.
	朝鮮商業會議所令 및 朝鮮重要物產同業組合令의 要旨	1915. 10.
	神社寺院規則及布教規則 의 要旨	1916. 1.
	不動產登記令의 施行並登記所의 設置	1916. 2.
	間島에 있어서 領事官의 裁判에 關한 法令의 改正	1916. 2.
	不動產登記令의 施行並登記所의 設置	1916. 7.
荒井賢太郎(度支部長官)	酒稅令의 要旨	1916. 9.
	不動產登記令의 施行並地方法院出張所의 設置	1916. 9.
	不動產登記令의 施行並地方法院出張所의 開設	1916. 12.
	東洋拓殖株式會社移住規則의 改正	1917. 4.
宇佐美勝夫(內務部長官)	朝鮮水利組合令의 制定에 대하여	1917. 8.
	朝鮮不動產登記令의 施行並地方法院出張所의 設置	1917. 9.
小原新三(農商工部長官)	米穀檢査規則의 改正 및 大豆檢査規則의 制定에 대하여	1917. 10.
牧野英一(東京帝大教授)	最近의 法律思潮	1917.10.
	司法院監獄課	答刑에 대하여
牧野英一(東京帝大教授)	最近의 法律思潮	1917.11.
司法院監獄課(完)	答刑에 대하여	1917.11.
牧野英一(東京帝大教授)	最近의 法律思潮	1917.12.
國分三亥(司法部長官)	朝鮮刑事令改正의 要旨	1918. 1.
關屋貞三郎(學務局長)	書堂規則의 發布	1918. 4.
	朝鮮銀行法中改正	1918. 5.
	朝鮮事業公債法中改正	1918. 5.
	貨幣法の 實施 및 舊韓國貨幣의 處分에 關한 法律의 發布	1918. 5.
	朝鮮官吏의 恩給 等에 關한 法律의 發布	1918. 5.
國分三亥(司法部長官)	共通法에 대하여	1918. 6.
小原新三(農商工部長官)	林野調查令 要旨	1918. 6.
國分三亥(司法部長官)	共通法에 대하여(完)	1918. 7.
鈴木穆(度支部長官)	地稅令改正의 要旨	1918. 8.

성명 및 지위	기사제목	호수
鈴木穆(度支部長官)	煙草稅令의 改正에 대하여	1918. 8.
鈴木穆(度支部長官)	地方金融組合令의 改正에 대하여	1918. 8.
水口隆三(度支部稅務課長)	砂糖消費稅令 및 印紙稅令의 新設 및 酒稅令改正의 要旨	1919. 5.
	朝鮮登錄稅令中改正	1919. 6.
	朝鮮阿片取締令要旨	1919. 7.
	國有山林의 經營과 山林令施行規則의 改正	1919. 7.
大塚常三郎(參事官)	墓地, 火葬場, 埋葬 및 火葬取締規則改正의 要旨	1919. 11.
	朝鮮人官吏俸給令改正	1919. 12.
柴田善三郎(學務局長)	高等普通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規則改正의 要旨	1920. 1.
	重要法令의 改正	1920. 5.
柴田善三郎(學務局長)	私立學校規則改正에 대하여	1920. 5.

그리고 이중 사립학교 규칙⁴³⁾이나 서당규칙,⁴⁴⁾ 태형에 관한 것⁴⁵⁾ 등은 조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특히 사립학교 규칙 개정의 경우는 종교와 교육과의 分立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계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사립학교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이었다.

酒稅令,⁴⁶⁾ 煙草稅令,⁴⁷⁾ 地方稅令⁴⁸⁾ 등의 경우는 1914년에 들어 강화된 조선총독부 재정독립 계획의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세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령 개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이밖에 1919년 9월 호에는 3·1 운동과 관련하여 수감된 인원에 대한 다양한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감옥별 수감인원의 할당 현황이나 죄명, 및 刑期, 연령별, 종교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⁴⁹⁾

43) 關屋貞三郎(學務局長), 『私立學校規則改正の要旨』, 『朝鮮彙報』(1915. 4).

44) 關屋貞三郎(學務局長), 『書堂規則の發布』, 『朝鮮彙報』(1918. 4).

45) 『笞刑に就て』, 司法府監獄課, 『朝鮮彙報』(1917. 10).

46) 荒井賢太郎(度支部長官), 『酒稅令の要旨』, 『朝鮮彙報』(1916. 9).

47) 鈴木穆(度支部長官), 『煙草稅令の改正に就て』, 『朝鮮彙報』(1918. 8).

48) 鈴木穆(度支部長官), 『地稅令改正の要旨』, 『朝鮮彙報』(1918. 8).

그런데 이러한 법률관련 자료들은 적어도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통치가 엄격한 통제와 경제적 수탈에 기반을 둔 열악한 식민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朝鮮』과 『朝鮮文朝鮮』의 경향과 성격

1920년 6월까지 발행되었던 『조선휘보』는 3·1운동의 여파로 1919년 8월 20일 총독부의 관제가 개정되고 이른바 ‘文化統治’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朝鮮’으로 개편되었던 것으로 보이며,⁵⁰⁾ 대체로 ‘조선이 발간된 후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⁵¹⁾ 『조선문조선』이 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두 잡지는 그 경향성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朝鮮文朝鮮』과 ‘조선’의 경우 같은 시기에 발행된 잡지의 경우도 편집체제와 기사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24년 1월에 발행된 잡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朝鮮文朝鮮』의 경우는 편집체제가 表紙繪, 口繪, 本欄, 詞壇, 讀者論壇, 雜纂, 餘白으로 구분된 편집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⁵²⁾ 『朝鮮』의 경우는 口繪, 本欄, 餘白錄, 詩壇, 彙報, 任命辭令, 日誌로 구분되어 있었으며,⁵³⁾ 수록 내용에 있어서도 本欄에 게재된 齋藤實 총독의 ‘年頭에 際하야’와 정무총감의 ‘新春을 迎하야’라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로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또한 『朝鮮』의 경우에만 임명사령이나 일지, 휘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도 양자가 서로 다른 정책적 배경 하에서 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49) 『騷擾事件在監人員表』(1919년 6월 30일 현재), 『朝鮮彙報』(1919. 9).

50)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改正)』, 朝鮮總督府 令30號,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大正 8年(1919) 8월 20일.

51) 1924년 1월호의 경우 일문판 조선이 105호로 발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글판 조선은 76호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의 발행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2) 『한글판 朝鮮』 76(1924 .1).

53) 『朝鮮』 105(1924 .1).

<표 4> 『朝鮮文朝鮮』에 게재되었던 중요 법률 관련 기사 목록(1924.1~1934.3)⁵⁴⁾

필자	기사제목	호수
	朝鮮農會令 및 産業組合令	100, 1926.2
內務局長 生田清三郎	河川令의 發布에 就하야	112, 1927.2
山林部長 園田寬	朝鮮特別綠故森林讓與令施行	113, 1927.3
	朝鮮貴族世襲財産令	113, 1927.3
視學官 高橋濱吉	登錄稅令의 改正에 就하야	130, 1928.8
財務局長 草間秀雄	銀行令 改正에 就하야	135, 1929.1
財務局長 草間秀雄	金融組合令 改正에 就하야	139, 1929.5
	改正金融組合令	139, 1929.5
法務局長 松寺竹雄	現行 民事令의 改正에 就하야	140, 1929.6
財務局長 草間秀雄	金融組合業務監督規程의 改正에 就하야	140, 1929.6
內務局長 生田清三郎	地方選舉取締規則發布의 對하야	145, 1929.11
京城地方法院判事 加藤昇夫	改正民事訴訟法實施에 就하야	145, 1929.11
	朝鮮簡易生命保險令	145, 1929.11
	朝鮮簡易生命保險規則	145, 1929.11
京城地方法院判事 加藤昇夫	改正民事訴訟法實施에 就하야(續)	146, 1929.12
	開墾干拓地移住補助獎勵規則	146, 1929.12
殖産局長 松村松盛	商工會議所令 發布의 際하야	152, 1930.6
	朝鮮商工會議所令全文	152, 1930.6
法務局長 深澤新一郎	盜犯等防止及處分에 關한 法律實施에 際하야	156, 1930.10
殖産局長 松村松盛	水産物罐詰製造營業取締規則	156, 1930.10
法務局長 深澤新一郎	盜犯等防止及處分에 關한 法律實施에 際하야	157, 1930.11
法務局長 深澤新一郎	不動産登記令改正에 對하야	158, 1930.12
殖産局長 松村松盛	商工會議所令의 實施	158, 1930.12
學務局長 武部欽一	中等學校 規定의 一部改正	159, 1931.1

54) <표 5>의 내용은 1991년 출판사 『서광』에서 ‘朝鮮文 朝鮮’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을 영인하여 발간하면서 1924년 1월부터 1934년 3월까지의 표지를 수록한 것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도 『朝鮮文 朝鮮』에는 洪雲波, 『朝鮮酒稅令의 概要』, 『朝鮮文 朝鮮』 135(1929.1); Y·H生, 『法律上으로 본 農村問題』, 『朝鮮文 朝鮮』 135(1929.1) 등 몇 가지의 법률관련 논설이 게재되어 있다.

필자	기사제목	호수
內務局長 今村武志	改正地方制度施行規則에 對하야	161, 1931.3
	地方選舉取締規則	163, 1931.5
	改正地方制度施行規則	163, 1931.5
朝鮮總督 齋藤實	朝鮮取引所令公布에 際하야	164, 1931.6
法務局長 深澤新一郎	民事令의 內容으로된 信託法에 對하야	165, 1931.7
	朝鮮 信託業令	165, 1931.7
	朝鮮無盡業令	165, 1931.7
朝鮮總督 宇垣一成	農業倉庫業令 公布에 際하야	166, 1931.8
	朝鮮農業倉庫業令	166, 1931.8
	朝鮮無盡業施行規則	166, 1931.8
政務總監 今井田清德	取引所令施行規則等發布에 際하야	168, 1931.10
財務局長 林繁藏	朝鮮信託業令施行規則에 對하야	168, 1931.10
	朝鮮取引所令施行規則及朝鮮正米市場規則	170, 1931.12
政務總監 今井田清德	朝鮮電氣事業令의 制定에 對하야	173, 1932. 2
遞信局長 山本犀藏	朝鮮電氣事業令의 制定에 際하야	173, 1932. 2
法務局長 笠井健太郎	朝鮮小作調定令에 關하여	183, 1933. 1
殖産局長 穗積眞大郎	鑛業令의 改正에 就하야	183, 1933. 1
	朝鮮小作調定令	183, 1933. 1
法務局長 笠井健太郎	刑事補償法規에 對하야	184, 1933. 2
殖産局長 穗積眞大郎	鑛業令施行規則의 改正에 對하야	184, 1933. 2
殖産局長 穗積眞大郎	鑛業에 關한 技術官派遣規則改正에 就하여	187, 1933. 2
學務局長 渡邊豊日子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存令의 發布에 就대하야	191, 1933. 9
農林局長 渡邊忍	朝鮮砂防事業令施行規則 發布에 就하야	191, 1933. 9
殖産局長 穗積眞六郎	度量衡令施行規則의 改正	192,1933. 10
殖産局長 穗積眞六郎	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의 改正에 對하야	192,1933. 12

다만 1931년 1월에 발행된 『朝鮮文朝鮮』과 『朝鮮』의 경우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는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총독부 당국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그리고 이러한 편집방침은

55) 『朝鮮』 188(1931 .1), 『朝鮮文朝鮮』 159(1931 .1)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수록된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地方自治制度의 擴充, 地方自治制의 第一歩, 地方制度의 改正에 對하야 回顧 十年地方自制的 準備 등이다.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둘째, 『朝鮮』의 경우는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각권 말미에 수록해 두었는데 ‘朝鮮’ 역시 총독부 각 부서의 사무관, 참사관, 시학관, 통역관 등이 편찬위원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전에 ‘彙報編纂委員’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⁷⁾

셋째, 『朝鮮文朝鮮』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목록을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선 『朝鮮文朝鮮』에서는 은행령이나 금융조합령, 소작조정령, 어업령, 신탁업령, 광업령 등 주로 경제관련 법령을 자주 소개하고 있으며, 改正金融組合令,⁵⁸⁾ 朝鮮商工會議所令全文,⁵⁹⁾ 開墾干拓地移住獎勵補助規則⁶⁰⁾ 등과 같이 중요 법령 등은 그 내용을 직접 수록함으로써 총독부의 정책을 일반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朝鮮』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총독부 기관지의 경향은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이 법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민지적 경향성을 띄면서 추진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¹⁾ 또한 『朝鮮文朝鮮』과 『朝鮮』에는 같은

56) 1932년 1월의 기사를 비교해 보아도 『조선문 조선』과 『조선』은 전혀 다른 기사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글판 조선에는 안확, 이능화, 최남선, 이상 등 비롯하여 다수의 문학가들의 문학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복규, 「조선총독부 기관지 국문판 『朝鮮』지(1924.1~1934.3) 수록 문학작품 및 민속·국문학 관련 논문들에 대하여」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57) 『朝鮮』, 1920. 7.1자에 실린 명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문에는 편찬위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위원장, 靑木戒三, 위원, 山口貞昌, 小田幹治郎, 丸山鶴吉, 上田駿一郎, 田中卯三, 守屋榮夫, 篠原英太郎, 國友尙謙, 伊藤武彦, 渡邊豊日子, 陶山武二郎, 菊山嘉男, 杉本良, 安武直夫, 半井清, 澤崎修, 倉橋鈺, 萩原彦三, 田中三雄, 富永文一, 矢野義二郎 이들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황민호, 「한국근대잡지에 나타난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 앞의 책 참조

58) 「改正金融組合令」, 『朝鮮文 朝鮮』 139(1929. 5).

59) 「朝鮮商工會議所令全文」, 『朝鮮文 朝鮮』 152(1930. 6).

60) 「開墾干拓地移住獎勵補助規則」, 『朝鮮文 朝鮮』 152(1930. 6).

61) 실제로 1920년 7월부터 1937년 6월까지 『朝鮮』에 게재된 중요 법령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총독부가 지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법령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황민호, 앞의 책에서 일부 언급해

시기에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의 법령이 별도로 게재되고 있는 경우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朝鮮文朝鮮』에는 河川令⁶²⁾, 特別緣故森林讓與令,⁶³⁾ 農業倉庫業令⁶⁴⁾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朝鮮』에는 朝鮮自動車交通事業令,⁶⁵⁾ 鹽輸入에 關한 制令,⁶⁶⁾ 競馬令⁶⁷⁾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1937~1944까지 『朝鮮』에 게재된 전시통제 관련 중요법령 목록(彙報)⁶⁸⁾

구 분	성명·지위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1937		重要産業統制法施行	(263), 1937.4.
1938	穗積殖産局長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	(272), 1938.1.
	大野政務總監	總動員法施行에 대하여大野政務總監談發表	(277), 1938.6.
	殖産局長	朝鮮重要礦物增産令에 대하여 殖産局長談發表	(277), 1938.6.
	警務局長	醫療關係者職業能力申告令施行에 관하여	(281), 1938.10.
	資源課長	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에 대하여 本府資源課長談	(281), 1938.10
1939	穗積殖産局長	고무使用制限規則制定에 부쳐穗積殖産局長談	(283), 1938.12
		臨時資金調停法施行狀況	(283), 1938.12
	政務總監	朝鮮마그네사이트會社令公布관하여總監談發表	(289), 1939.6.
1940		國民登錄制實施 實施에부쳐	(290), 1939.7
		小作料統制令의 施行	(296), 1940.1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制定	(296), 1940.1
	農振課長 岸勇一	小作料統制令에 부쳐서	(297), 1940.2
	財務局長	朝鮮産金令의 改正에 관하여 財務局長談	(297), 1940.2
		朝鮮職業紹介令制定	(297), 1940.2
		總動員試驗研究令施行	(297), 1940.2

두었다.

- 62) 內務局長 生田清三郎, 「河川令의 發布에 就하여」, 『朝鮮文 朝鮮』 112(1927. 2).
 63) 山林部長 園田寬,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施行」, 『朝鮮文 朝鮮』 113(1927. 3).
 64) 朝鮮總督 宇垣一成, 「農業倉庫業令 公布에 際하여」, 『朝鮮文 朝鮮』 166(1931. 8).
 65) 荻原三郎, 「朝鮮自動車交通事業令의 公布와 陸上運輸機關의 統制에 就いて」, 『朝鮮』 222 (1933. 11).
 66) 專賣局長 松本誠, 「鹽의 輸入에 關する 制令 發布에 就て」, 『朝鮮』 179(1930. 4).
 67) 事務官 鹽田正洪, 「穀物檢査令과 競馬令에 就て」, 『朝鮮』 221(1933. 1).
 68) 이 표는 휘보에 나타나는 기사 법령관련 기사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1회만 기재 하였으며, 대체로 전시통제적 성격의 법률 목록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공포했던 법령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 분	성명·지위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1940		總動員物資使用收用令施行規則發布	(298), 1940.3
		朝鮮職業紹介所令實施	(298), 1940.3
		纖維工業設備制限規則制定합	(299), 1940.4
	鐵道局 營業課長 大和田福徳	카바이트配給統制規則公布합	(300), 1940.5
	企劃部長	鐵鋼需給統制規則의 公布	(303), 1940.8
	三橋警務局長	朝鮮映畫令實施됨	(303), 1940.8
	當局發表	雜穀配給統制規則發布합	(303), 1940.8
	朝鮮總督府當局	住宅建設用資材配給統制의 實行	(304), 1940.9
	企劃部長	鐵屑等配給統制規則公布	(306), 1940.11
	殖産局長	價格等統制令의 改正에 부처殖産局長談	(306), 1940.11
1941	上燻內務局長	賃金統制令改正됨	(315), 1941.8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公布	(317), 1941.10
		港灣運送業統制令施行規則公布	(317), 1941.10
1942	新貝遞信局長談	海運統制令改正公布합	(326), 1942.7
	殖産局長	企業整備令公布합	(326), 1942.7
	山澤農林局長	木材統制令公布합	(326), 1942.7
	農林局長	朝鮮薪炭配給統制規則公布합	(328), 1942.9
	石田厚生局長	戰時災害保護法公布합	(328), 1942.9
	厚生·學務 兩局長	朝鮮青年特別鍊成令公布	(330), 1942.11
	石田厚生局長	醫療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330), 1942.11
1943	農林局長	朝鮮食糧管理施行規則公布	(341), 1943.10
	司政局長	國民徵用扶助規則發布됨	(342) 1943.11
1944	政務總監	朝鮮女子青年鍊成所規程制定합	(346), 1944.3
	法務局長	朝鮮會社等臨時措置令公布합	(350), 1944.7
	鹽田鑛工局長	女子挺身勤勞令公布합	(352), 1944.9
	鑛工局長	朝鮮軍需會社法施行規則公布합	944.11·12(合併號)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朝鮮』에 수록된 법률관련 기사나 논설의 건수나 분량이 『朝鮮文朝鮮』에 게재된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편집체제와 수록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朝鮮文朝鮮』은 조선인들에게

총독부의 정책이나 체제의 우수성을 계몽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던 반면에 『朝鮮』의 경우는 관보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⁹⁾

한편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朝鮮』을 통해 각종 통제 법령의 내용과 성격을 일반에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표 5>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우선 총독부에서는 1938년 4월 1일 전면적인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重要産業統制法’과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 등의 법령을 실시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갔으며,⁷⁰⁾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정무총감이나 해당부서 과장 등의 명의로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38년 5월 5일부터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자 大野 정무총감은 1938년 6월에 발행된 『朝鮮』을 통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있어서의 총동원체제의 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각오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⁷¹⁾ 또한 1942년 10월 15일에 발표된 ‘醫療關係者徵用令’⁷²⁾이나 1944년 11월에 공포된 ‘女子挺身勤勞令’⁷³⁾ 등에 대해서도 각각 石田厚生局長과 鑛工局長의 명의로 각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徵兵制’와 관련된 다양한 논설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이외에도 『朝鮮』에서는 고무

69) 그러나 ‘조선’과 ‘조선문조선’에 대한 성격 비교는 현재 ‘조선문조선’의 목차가 1924.1~1934.10까지 밖에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향의 파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0) ‘重要産業統制法施行’, 『朝鮮』 263(1937. 4), 126쪽;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 『朝鮮』 272(1938. 1).

71) ‘總動員法施行에 대하여 大野政務總監談發表’, 『朝鮮』 277(1938. 6), 128쪽.

72) ‘醫療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朝鮮』 330(1941. 11), 103쪽.

73) ‘女子挺身勤勞令公布함’, 『朝鮮』 352(1944. 9), 86쪽.

74) ‘徵兵制施行に總督談發表’, 『朝鮮』 325(1942. 6); ‘監視に半島青年數千名採用’, 『朝鮮』 325(1942. 6); 朝鮮軍參謀 磯矢伍郎, ‘建軍の本義と徵兵制實行’, 『朝鮮』 326(1942. 7); 總督府 警務課長 八木信雄, ‘徵兵制度施行の意義’, 『朝鮮』 326(1942. 7); 人文社主幹 崔載瑞, ‘建徵兵制實施と知識階級’, 『朝鮮』 326(1942. 7); 毎日新報社 主筆 徐椿, ‘徵兵制實施と半島人の感激’, 『朝鮮』 326(1942. 7).

사용제한규칙이나 석탄배급통제규칙, 카바이트배급통제, 木材統制'·'薪炭配給統制 등과 같은 물자통제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 이들 법령의 정당성과 대중들의 실천을 독려하는 '談話'가 게재되고 있었다.⁷⁵⁾

또한 이 시기에는 本欄에도 '朝鮮教育令'⁷⁶⁾·'朝鮮民事令'⁷⁷⁾·'小作統制令'⁷⁸⁾·'朝鮮青年特別鍊成令'⁷⁹⁾ '思想犯保護觀察令'⁸⁰⁾이나 '治安維持法改正'⁸¹⁾ 등과 관련한 총독부 당국자들의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다. 특히 '사상범 보호관찰령'과 관련된 논설에서는 이법은 仁愛의 정신으로 제정된 일본의 독특한 법률로서 彈壓法的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嚴父慈母의 사랑으로서 사상범을 보호선도 함으로서 천지를 포용하는 태양과 같이 따사로운 손길로 상한 마음에 명량한 광명을 주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기도 하였다.⁸²⁾ 또한 1941년 5월에 개정된 치안유지법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도 事變勃發(중일 전쟁-필자) 이래 내선일체 정신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반도동포의 銃後團結과 戰域奉公의 정신이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일부 不逞한 무리들의 反國家思想에 기초한 騷動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개정 법률을 실시하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 사상대책의 만전을 기하는데 적절하고 긴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⁸³⁾

75) 이밖에 '朝鮮'에 게재된 물자통제와 관련된 記事로는 「タイヤ及チューブの配給統制」(彙報, 『朝鮮』 287(1939. 4); 「皮革の配給統制に關し穂積殖産局長談」(彙報, 『朝鮮』 287(1939. 4) 등이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다양한 통제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韓國近代雜誌」에 나타난 法律關聯資料의 傾向,에서도 일부 언급하였다.

76) 鹽原時三郎, 學務局長, 「朝鮮教育令の改正に就て」, 『朝鮮』 275(1938. 4).

77) 法務局長 宮本元, 「朝鮮民事令の改正」, 『朝鮮』 298(1940. 3).

78) 農振課長 岸勇一, 「小作料統制令に付いて」, 『朝鮮』 297(1940. 2).

79) 政務總監 田中武雄, 「朝鮮青年特別鍊成令の制定に就て」, 『朝鮮』 331(1942. 12).

80) 京城保護觀察所長 堤良明, 「保護觀察の對象と其の指導」, 『朝鮮』(1937. 11).

81) 「治安維持法改正法律の施行」, 『朝鮮』 312(1941. 5).

82) 京城保護觀察所長 堤良明, 앞의 글, 이 논설은 京城保護觀察所 管内の對象者, 思想犯 保護觀察法の精神, 本法運營者として保護觀察所の心構, 對象者(被保護者)의心構, 一般社會の理解と援助 등의 목차로 되어 있다.

83) 앞의 글 「治安維持法改正法律の施行」 참조.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력동원과 사상 및 물자통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관지였던 『朝鮮』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는 법규의 내용과 입법취지의 정당성을 논설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전시통제기에 일제가 실시했던 통제법령의 사회적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발간한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시기별 변천과정과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법률 관련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방 이전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던 재조일본인들은 그 초기부터 다양한 성격의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총독부로서는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정책들과 중요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관지의 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는 시기별로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1944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독부월보』의 경우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주력하였던 반면에, 『조선휘보』와 『조선』에 이르면 각종 사회정책이나 법률제정에 대해 총독부의 입장을 밝히는 논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20년대에 들어 발행되었던 『朝鮮』과 『朝鮮文朝鮮』의 경우는 똑같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었지만, 1924년 1월부터 1934년 3월까지 남아있는 『조선문조선』과 같은 시기의 『조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체제와 구성상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彙報’, ‘任命辭令’, ‘日誌’ 등은 『조선』에만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선회보』의 경우는 ‘地方號’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며, 각 기관지에 게재되었던 중요 기사의 내용도 시기별로 성격을 달리고 하고 있었는데 이는 총독부의 식민통치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선총독부월보』에 게재되었던 법령관련 기사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우선 월보에서는 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에 관한 논설이나 별도의 해설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으며 ‘민·형사판결’·‘법령’ 등을 항목으로 하는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게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민사사건의 판결례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나 경작권에 관한 내용이 자주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보’에는 地稅令·市街地稅令·煙草稅令·國稅徵收令 등에 관한 해설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監獄事務’와 ‘寺刹令’·‘農工銀行令’ 및 地方金融組合令 改正要旨와 指紋法 시행에 대한 입법취지와 법령의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 되고 있었다. 이밖에 ‘감옥사무’와 재판사무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지배정책이 강압적 무단통치였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선회보』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규칙이나 서당규칙, 태형에 관한 법률이나 논설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조선총독부월보』와 마찬가지로 酒稅令, 煙草稅令, 地方稅令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1919년 9월 호에는 3·1운동과 관련하여 수감된 인원에 대한 다양한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감옥별 수감인원의 할당 현황이나 죄명, 및 刑期, 연령별, 종교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회보’에서는 중요 법령들에 대해 해당부서 당국자의 논설이나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 체계의 변화는 『조선』에서도 그대로 채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법률관련 자료의 경우 『朝鮮文朝鮮』과 『朝鮮』에 게재된 내용은 거의 유사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선 ‘은행령’이나 ‘금융조합령’·‘소작조정령’·‘어업령’·‘신탁업령’·‘광업령’ 등 주로 경제관련 법령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었으며, 朝鮮商工會議所令全文, 開墾干拓地移住獎勵補助規則 등의 경제

관련 법령들이 수록되고 있었다. 이밖에 河川令, 特別緣故森林讓與令, 農業倉庫業令이나 朝鮮自動車交通事業令, 鹽輸入에 관한 制令, 競馬令 등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의 제정을 전후해서는 ‘重要産業統制法’과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醫療關係者徵用令’·‘女子挺身勤勞令’·‘고무사용제한규칙’, ‘석탄배급통제규칙’, ‘카바이트배급통제’, ‘木材統制’, ‘薪炭配給統制’ ‘朝鮮教育令’ ‘朝鮮民事令’·‘小作統制令’·‘朝鮮青年特別鍊成令’ ‘思想犯保護觀察令’이나 ‘治安維持法改正’등에 대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경우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법률관련 논설이나 관련기사들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내용이나 입법취지의 변화와 식민지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법률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나타나고 있었던 다양한 성격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 Analysis of the Publications of the Cho Sun Chongdokbu General and the Trends in Related Legal Documents under Japanese Imperialism

Hwang, Min-Ho*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perties of Japanese colonialism through legislative editorials and data carried in 『Cho Sun Chongdokbu Worlbo』, 『Cho Sun Hwibo』, 『Cho Sun』 and 『Chosuneo Cho Sun』 which were published by the Cho Sun government-general beginning in 1910 during the annexation of Chosun by Japa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produced various publications in many forms throughout the period of colonization. These publications were used, first, as an organ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collected data about Chosun order to control it, and secondly to inform the people of their policies and laws. A variety of editorials and legislative data for important regulations enforced at that time were published by Chosun government-general. While publications from 1910 to the mid 1930s dealt with laws relating to the economy and the criminal cod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30s they dealt with wartime regulation and legislation. ‘Cho Sun Hwibo’ and ‘Cho Sun’ both complied with the publishing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 and their editing committees were composed of government officials from each department.

This paper tries to give a meaningful study of the social implication of Japanese legal

* Researcher,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ol in the publications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Key Words] wartime regulation, Cho Sun Chongdokbu Worlbo, Cho Sun Hwibo, Cho Sun, Chosuneo Cho Sun